

반복되는 행정조사 폐지하여 기업 부담 줄인다

- 법제처, 행정조사 효율화를 위한 법령 정비 추진
- 법률 6개, 대통령령 1개 일괄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반복되는 행정조사를 폐지하고 정기 행정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행정조사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일괄개정안과 대통령령개정안(법률 6개, 대통령령 1개)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규제로 작용하는 반복되는 행정조사 등 숨은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협업해 왔다.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특히 법제처는 관계 부처가 제도 개선 방향을 확정한 즉시, 법령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하는 것부터 입법예고 등 모든 입법 절차를 전담하여 처리함으로써, 정책이 신속히 법제화 되는 데 앞장섰다.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규제를 개선한 이번 정비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전체사례는 [붙임] 유형별 정비 사례 참조

(사례 1) HACCP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는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별도의 조사를 받지 않는 등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식품위생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3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 제1항 및 제3항)

(사례 2) 조사의 대상 및 내용이 유사한 ‘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 및 ‘가족친화지수 측정을 위한 조사’ 중에서 ‘가족친화인증’만 남기고 나머지 둘은 폐지한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4조)

(사례 3)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1항)

「식품위생법」 등 6개의 법률 일괄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12월 1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정비는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작은 부분까지 관계 부처가 힘을 합쳐 발굴하고 개선한 사례” 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	책임자	과 장	손중근	(044-200-6847)
		담당자	사무관	윤중섭	(044-200-6845)

붙임 1 유형별 정비 사례

① 유사·중복 행정조사 폐지 (2개)

정비 내용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기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는 '가족친화인증을 위한 실태조사'와 조사 대상 및 내용이 유사

개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폐지

✓ 가족친화수준조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기존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조사'는 '가족친화인증을 위한 실태조사'와 조사 대상 및 내용이 유사

개선 '가족친화수준조사' 폐지

② 행정조사 실시주기 완화 등 편의 제고 (3개)

정비 내용

✓ 식품 HACCP 인증 연장 (「식품위생법」 제48조의2)

기존 • HACCP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
• HACCP 인증 후 매년 정기 조사·평가를 실시함에도 인증 연장 신청 시 추가적인 조사를 예외 없이 실시

개선 • 유효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여 재인증 준비에 따른 영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
• 정기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 연장신청의 내용이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인증 연장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

✓ 축산물 HACCP 인증 연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

기존 • HACCP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
• HACCP 인증 후 매년 정기 조사·평가를 실시함에도 인증 연장 신청 시 추가적인 조사를 예외 없이 실시

개선 • 유효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여 재인증 준비에 따른 영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
• 정기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 연장신청의 내용이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인증 연장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

✓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기존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보고서를 연 2회(4월 말, 10월 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개선 사업보고서를 연 1회(4월 말) 제출 하도록 완화

③ 사전통지 신설 (1개)

정비 내용

✓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지도·감독** (「공인노무사법」 제25조, 고용부)

기존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 출입·조사시 사전통지 규정 부재

개선 사전통지 규정 마련

④ 과도한 제재 정비 (1개)

정비 내용

✓ **거짓 보고 등에 대한 처벌** (「항만법」 제110조)

기존 행정조사 시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벌금 및 과태료 중복* 규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선 벌칙 규정 삭제

⑤ 위탁 행정조사의 근거 규정 마련 (1개)

정비 내용

✓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고용부)

기존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대한 위탁 근거규정 미비

개선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위탁 근거 마련

붙임 2 법령 정비안 사례

- (법률 정비안 사례) HACCP 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우수 업소에 대한 인증 연장 절차 간소화 근거 마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① 제48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u>3년</u> 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① ----- ----- 4년-----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u>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③ ----- ----- <u>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제4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년</u> ----- -----.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u>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u>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등) ① ----- ----- -- <u>업소에 대하여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와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u>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대통령령 정비안 사례) 위탁 행정조사 근거 규정 마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행	개정안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략) <u><신설></u>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u>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법 제6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 <u>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u> <u>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u> <u>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공공단체</u>
<u>② (생략)</u> <u><신설></u>	<u>③ (현행 제2항과 같음)</u> <u>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공공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u>